

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4 . 12 평창군수(환경복지과장)

나. 회부일자 : 1999. 4.26

다. 상정일자 : 1999. 4.26. 제65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2차본회의

2. 제 안 이 유

- 관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'97 도비 보조사업으로 건립한 장애인 재활센터를 활용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설치, 운영하고자 하며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.

3. 주 요 내 용

가. 위치(제2조)

-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390-10번지

나. 업무 및 기능(제4조)

-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-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
- 재활, 자립을 위한 홍보등에 관한 사항
-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

다. 이용대상(제5조)

- 장애인으로 하며,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

라. 위탁관리(제7조)

-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관리
-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
(필요시 군수가 지원)

마. 수탁자의 의무(제8조)

- 수탁자의 보조금 및 사용재산 사용방법
- 시설의 이용자 및 시설물에 손해에 대한 수탁자 배상

바. 관리감독(제9조)

- 작업장 운영사항 조사 및 서류검사
- 시정조치등

4. 검토 결과

-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 관련법상 저촉사항이 없으며, 기타 자구등에도 별문제점이 없음.